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3호 2020. 1. 21(화)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0-124호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남원시 공고 제2020-95호 도시계획시설(중로2-34호선) 실시계획(변경)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11
- 남원시 공고 제2020-104호 도로공고(변경) ----- 13

회 람																				
--------	--	--	--	--	--	--	--	--	--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20 - 124호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지역으로 한정된 범위를 농촌지역까지 포함한 남원시 관내로 확대하여 범죄 우려가 있는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조례”를 → “남원시 빈집 정비 조례”로 변경
- 나. 정의, 지원대상 등을 개정 (안 제2조,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593), FAX(063-620-6719)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 0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축 과 장

1. 개정이유

도시지역으로 한정된 빈집 정비 사업을 농촌지역까지 확대하여 범죄 우려가 있는 주택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조례”를 → “남원시 빈집 정비 조례”로 변경
- 나. 정의, 지원대상 등을 개정 (안 제2조,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1. 21 . ~ 2020. 02. 10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지역 빈집의”을 “빈집의”로 한다.

제2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중 “도시지역의 1년”을 “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u>도시지역 빈집의</u>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시지역”이란 「<u>농어촌정비법</u>」 제2조에 따른 농촌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p> <p>2. 3. (생략)</p> <p>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1. <u>도시지역의 1년 이상</u>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p>	<p><u>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 ----- 빈집의 ----- ----- -----</p> <p>제2조(정의) ----- -----</p> <p><삭 제></p> <p>2. 3.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대상 등) ① ----- ----- ----- ----- -----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p> <p>1. <u>1년</u> ----- -----</p>

<p>물</p> <p>2. (생략)</p> <p>② (생략)</p>	<p>--</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규제 예비심사 검토의견서

□ 검토대상 : 「남원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 :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검토 방향

○ 규제의 신설·강화 및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포함 여부

□ 검토의견 : **비 심사대상**

○ 빈집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민에 수혜적인 규정이며, 도시지역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남원시 관내 빈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가 아니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님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

남원시 공고 제2020 - 95호

**도시계획시설(중로2-34호선) 실시계획(변경)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월락동 주택건설사업 관련 -

남원 도시계획시설(중로2-34호선)사업에 대하여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0년 1월 17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중로2-34호선)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도시계획도로(중로2-34호선) 개설공사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월락동 441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구 분	호 선 명	폭 원(m)	총 연 장(m)	금회개설(m)	비 고
계획도로	중로2-34	15	34	3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수창건설(주) 대표 이성식(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775-13)
 - 나. (주)디에스종합건설 대표 손창옥(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4, 301호)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5.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편입 토지 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시	동·면	지번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권리종류	주소	성명	
1	남원	월락	441-0	답	354.0	238.7	217.6	한국도로공*	경*북도 김*시 혁신8 로 *7	-	-	-	
2	남원	월락	441-1	도	36.0	35.7	-	수*건설주식*사 외 1인	부산*역시 금정구 금 *로 4*5	-	-	-	
						-	35.9	주*도시보*공사	부산*역시 남구 문현 *응로 *0				
3	남원	월락	441-5	답	204.0	52.2	79.7	국토교통부	국				
4	남원	월락	622-76	구	7,891.0	96.0	67.7	농림수산식품부	국				
5	남원	월락	622-80	구	1,650.0	101.8	140.3	농림수산식품부	국				
6	남원	월락	622-81	구	518.0	1.0	5.3	농림수산식품부	국				
7	남원	월락	479-7	도	76.0	4.1	0	남원시	공				
8	남원	월락	422-0	답	313.0	10.0	0	이*탁	남*시 월*동 월*길 *1-18				

<편입 지장물 조서>

- 해당없음

◎ 남원시 공고 제 2020 - 104호

도 로 공 고(변경)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20-1	남원시 산동면 태평리 898-1	오*록	2019-건축과- 신축신고-401	74.3	4.7	180	남 원 시 산 동 면 태 평 리 898-1	남 원 시 산 동 면 태 평 리 898-5	지번정정에 따른 지번변경
		양*방			4.7	44	남 원 시 산 동 면 태 평 리 904	남 원 시 산 동 면 태 평 리 898-3	
		오*록			4.7	125	남 원 시 산 동 면 태 평 리 894	남 원 시 산 동 면 태 평 리 894-1	